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정관

<개정 2022.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취학 전 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7., 1981.10.27., 1988.11.2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1981.10.27., 2019.2.8., 2021.2.4.>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1977.1.7., 1979.1.1., 1980.3.1., 1981.3.1., 1981.10.27., 1985.3.1., 1986.6.24., 1988.11.25., 2009.11.20., 2016.12.14., 2018.6.1.>

1. 영진전문대학교
2. 영진전문대학교 부설유치원
3. 영진사이버대학교

제3조의2 삭제 <2009.11.20.>

제4조(주소 등)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에 둔다. <개정 1981.10.27., 1995.4.21., 2014.12.18., 2019.2.8.>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사무소 외의 필요한 곳에 교육조직, 부속기관, 기타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2.8.>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 1981.10.27., 2008.8.29., 2012.9.4.>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그 밖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1981.10.27.>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27., 1991.8.21., 2007.11.26., 2019.2.8.>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1981.10.27., 2019.2.8.>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81.10.27., 2021.2.4.>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1981.10.27., 2021.2.4.>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0.27., 1983.12.22., 1986.6.24., 1991.8.21.>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1981.10.27.>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1.>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예산의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각각 1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9.2.8.>

[본조신설 2007.11.26.]

제13조 부터 제17조 삭제 <2007.11.26.>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1975.9.1., 1976.1.2., 1977.10.11., 1981.10.27., 2008.6.19.>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1.26.>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27., 1991.8.21., 2007.11.26.>

제3항부터 제4항 삭제 <2007.11.26.>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2.4.>

[본조신설 2007.11.26.]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영진전문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개정 2018.6.1.>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4.12.18., 2019.2.8.>

1. 전문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6.]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1.8.21., 2007.11.26., 2021.2.4.>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86.6.24., 1997.9.30., 2019.2.8., 2022.4.1.>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6., 2021.2.4.>

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며,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7.11.26., 2019.2.8., 2021.2.4.>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2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26., 2021.2.4., 2022.4.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본조신설 1981.10.27.]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1.8.21., 2007.11.26., 2019.2.8.>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1.26.>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그 밖에 법인의 내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전문개정 2022.4.1.]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1.10.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1.10.27.>

제25조 삭제 <2007.11.26.>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1.26., 2021.2.4.>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1.2.4.>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11.26., 2021.2.4.>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에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2.4.>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6.6.24., 2019.2.8., 2021.2.4.>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4.>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4.>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4.>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0.27.]

제28조(이사회에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6., 2019.2.8.>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12.22., 2007.11.26., 2019.2.8.>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1.8.21., 2021.2.4.>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나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24., 1995.4.2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10.27., 1991.8.21., 2007.11.26.>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에 각각의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8., 2019.2.8.>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3(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진전문대학교(교원 5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5명,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개정 2021.4.23.>

2. 영진사이버대학교(교원 5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1명,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개정 2021.4.23.>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2.4.]

제31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1.2.4.>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개정 2018.8.16.>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6.>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에서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31조의9(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의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의원회에서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21.2.4.>

[본조신설 2018.8.16.]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81.10.27., 1991.8.21., 1995.4.21., 1997.8.11., 2007.11.26., 2009.11.20., 2019.2.8.>

1.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채권 및 사생상품)
2. 기술정보서비스사업(기술연구용역, Software 개발), Hardware 개발사업(실험 실습장비 개발, 교육기자재 개발)
3. 부동산 임대업
4. 임업

5. 삭제 <2007.11.26.>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①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진모빌스, 영진농장을 경영한다.
<개정 1981.10.27., 1986.6.24., 1995.4.21., 1997.8.11., 2007.11.26., 2009.11.20., 2011.5.6.>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업체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27., 1997.8.11., 2007.11.26., 2009.11.20., 2011.5.6.>

1. 영진농장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 50번지
2. 영진모빌스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2동 340-29번지

제2항 부터 제3항 삭제 <2007.11.26.>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6.6.24., 1991.8.21., 202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또는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1.10.27., 1997.8.11., 2021.2.4.>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29.>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1981.10.27., 2008.8.29., 2021.2.4.>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29.>
[본조신설 1981.10.27.]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6.1.2., 1981.10.27., 1997.10.11., 2001.11.26., 2012.2.7., 2019.2.8.>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직무, 근로조건, 징계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1979.1.1., 1981.10.27., 1997.9.30., 1999.8.4., 2001.11.26., 2009.6.17., 2012.9.4., 2014.12.18., 2019.2.8., 2019.6.13.>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12.10.>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교육 및 봉사,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18.>
- ③ 유치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6., 2014.12.18., 2019.2.8.>
- ④ 전문대학교의 부총장 및 각 실·처장 등의 보직과 사이버대학교의 부총장 및 각 실·처장 등의 보직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신설 1981.10.27., 1993.3.27., 1995.5.18., 2001.11.26., 2002.12.26., 2009.6.17., 2010.6.24., 2014.12.18., 2015.12.10., 2019.2.8.>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1.10.27., 2008.8.29., 2014.12.18., 2019.2.8.>
- ⑥ 조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하되, 임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교임용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26., 2009.6.17., 2014.12.18., 2019.2.8.>
- ⑦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6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전문개정 2015.12.10.]

제39조의2(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해당 교원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1991.8.21.]

제39조의3 삭제 <2001.11.26.>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 1981.10.27., 1983.12.12., 1991.8.21., 2007.11.26., 2008.8.29., 2015.12.10., 2019.2.8., 2021.2.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5.12.10.>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5.12.10.>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5.12.10.>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5.12.10.>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21.2.4.>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5.12.1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삭제 <2021.2.4.>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 1981.10.27., 1986.6.24., 1991.8.21., 2007.11.26., 2014.12.18., 2019.2.8.>

1.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2.4.>
7. 제4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삭제 <2021.2.4.>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1.10.27.>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27., 1991.8.21.>
- ③ 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1981.10.27., 1986.6.24., 1991.8.21.>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40조제5호, 제40조제7호 및 제40조제7호의2에 의한 휴직된 교원의 보수 지급방법은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

제44조 부터 제46조 삭제 <2007.11.26.>

제47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4.12.18.>

- ②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정년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4.24.>
[본조신설 1981.8.21.]

제47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8.21.]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8.21.]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1.10.27., 1991.8.21., 2007.11.26., 2014.12.18.>

[본조신설 1979.1.16.]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3.3.27., 1995.5.18., 2007.11.26., 2014.12.18., 2019.2.8.>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8.>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교원연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8.>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18., 2019.2.8.>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6.6.24.>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개정 2015.12.10.>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③ 삭제 <2014.12.18.>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9.6.17., 2013.1.21., 2014.12.1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8.21.]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별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1.8.21., 1993.3.27., 1995.4.21., 2009.6.17., 2014.12.18. 2019.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10.27.]

제52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9.6.17., 2014.12.18.>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4.21.>
[본조신설 1981.10.27.]

제53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4.12.18.>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본조신설 1981.10.27.]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교육기관 소속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6.17., 2014.12.18.>
[전문개정 1991.8.21.]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1.8.21.>
[본조신설 1981.10.27.]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4.12.18., 2015.8.21., 2022.4.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3.29.>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4.1.>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
 [전문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22.4.1.]

제57조 부터 제64조 삭제 <2007.11.26.>

제3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0.4.13., 1991.8.21., 1996.7.22., 2014.3.25., 2015.12.10., 2019.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2.1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신설 2019.2.8.>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2.8.>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본조신설 1977.8.26.]
 [전문개정 1981.10.27.]

제66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제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998.4.24.>
 ④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1991.8.21.>
[전문개정 1981.10.27.]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10.27.>
[본조신설 1977.8.26.]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와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1.10.27., 1986.6.24., 1998.4.24.>
[본조신설 1977.8.26.]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1981.10.27.>
[본조신설 1977.8.26.]

제70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일반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9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있으면 익년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10.27., 1986.6.24., 1991.8.21., 1997.8.11., 2009.6.17., 2014.12.18.,
2018.6.1.>
[본조신설 1977.8.26.]

제2절 전문대학교

제73조(총장 등) ① 전문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6.17., 2019.2.8.>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
한다.
③ 전문대학교에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1997.8.11., 2009.4.16., 2014.12.18., 2019.2.8., 2021.2.4.>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 직무대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21.2.4.>
⑤ 전임 총장의 경륜을 대학의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명예총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2.8.>
[본조신설 1981.10.27.]

- 제74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교에 교무처, 입학지원처, 학생복지취업처, 학사지원처 및 기획조정실, 부속실, 국제교류원,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 등을 둔다. <개정 1979.1.1., 1984.9.4., 1988.11.25., 1990.4.13., 1993.3.27., 1997.8.11., 1998.4.24., 1999.2.3., 1999.8.4., 2002.12.26., 2004.7.7., 2010.1.1., 2012.2.7., 2013.2.21., 2014.12.18., 2019.2.8., 2020.9.16., 2021.2.4.>
- ② 교무처장, 입학지원처장, 학생복지취업처장, 기획조정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학사지원처장, 부속실장, 국제교류원장,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는 각 처(실)에 부처(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9.4., 1990.4.13., 1993.3.27., 1997.8.11., 1998.4.24., 1999.2.3., 1999.8.4., 2004.7.7., 2009.6.17., 2010.1.1., 2012.2.7., 2013.2.21., 2014.12.18., 2018.2.8., 2020.9.16., 2021.2.4., 2022.8.1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장업무는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며, 각 실·처·본부의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 또는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90.4.13., 1997.8.11., 1998.4.24., 2021.2.4.>
- ④ 팀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6.4.17., 1998.4.24., 2009.6.17.>
- ⑤ 각 실·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실·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6.17.>
- [본조신설 1977.8.26.]

- 제75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전문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19.2.8.>
-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겸보한다. 다만, 부설기관의 장은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21.2.4., 2022.8.11.>
-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6.17., 2014.12.18.>
- ④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8., 2021.2.4.>
- [본조신설 1977.8.26.]

제76조 삭제 <2014.12.18.>

- 제76조의2(산학협력단)** ① 전문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6.1., 2019.2.8.>
-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전문대학 산하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07.11.26.]

- 제76조의3(LINC3.0 사업단)** ① LINC3.0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 ② LINC3.0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업단장은 대학 실·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2.4.1.]

- 제76조의4(마이스터대 사업단)** ① 마이스터대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 ② 마이스터대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④ 마이스터대 사업단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2.4.1.]

제3절 사이버대학교

제77조(총장 등) ① 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9.2.8.>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2.12.26.>
 - ③ 사이버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2.12.26., 2014.12.18., 2019.2.8.>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전임 총장의 경륜을 대학의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명예총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2.8.>
- [본조신설 2001.11.26.]

제78조(하부조직)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교무학생처, 입학처, 학사지원처, 기획처, e러닝처를 둔다. <개정 2007.11.26., 2010.1.1., 20110.9.1., 2012.11.9., 2014.12.18., 2019.2.8., 2021.4.23.>

- ② 교무학생처장, 입학처장, 학사지원처장, 기획처장, e러닝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는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09.6.23., 2010.1.1., 2010.9.1., 2012.11.9., 2014.12.18., 2021.4.2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각 처에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3.>
 - ④ 팀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9.6.17., 2014.12.18.>
 - ⑤ 각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6.17., 2014.12.18., 2021.4.23.>
 - ⑥ 삭제 <2021.2.4.>
- [본조신설 2001.11.26.]

제79조(부속시설)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8.>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6.17.>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8.>
- [본조신설 2001.11.26.]

제4절 부설유치원

제80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 1명을 두되, 필요시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연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8.21., 2007.11.26., 2021.2.4.>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26.>
 - ④ 유치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17., 2021.2.4.>
- [본조신설 1986.6.24.]

제5절 정원

제81조(정원) 법인,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개정 1980.3.1., 1981.10.27., 1996.7.17., 2001.11.26., 2012.2.7. 2017.3.29.>
[본조신설 1977.8.26.]

제8장 보칙

제82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그 밖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구매일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1981.10.27., 2021.2.4.>

제8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10.27.>

제84조(청렴의무 등) ① 법인의 임직원, 설치·운영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

[중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 <2022.4.1.>]

제8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최종곤	23.8.13.	4년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2가 883-9
이사	정철용	37.12.15.	4년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1가 110
이사	최달곤	36.11.3.	2년	대구직할시 북구 칠성동 1가 208-11
이사	배한업	42.2.5.	2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동암동 338
이사	최세곤	34.9.2.	2년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 아파트 15동 9호
이사	송동진	36.9.10.	2년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동 83
감사	김진억	35.10.28.	1년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4가 486

[제84조에서 이동 <2022.4.1.>]

부칙(1974.1.5. 설립인가)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9.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43조의2제2조 중 대구공업전수학교(1976.12.21. 폐지인가)는 1979.2.28.까지 설치·경영한다.

부칙(1977.8.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1977.10.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0.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문대학 보직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 부학장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1983.12.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9.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6.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7.5.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4.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8.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3.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4.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8.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8.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대학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 조직은 정관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2002.12.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2012.1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기능직은 이 정관에 따른 기술직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따른 기능직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기술직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2014.12.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3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진사이버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진전문대학” 및 “영진전문대학부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8.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9.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개정 1981.10.2., 1986.6.24., 1990.4.13., 1991.8.21., 1997.8.11., 2009.6.17., 2014.3.25., 2017.3.29.>

직종	일반직	기술직	계
인원	3명		3명

별표 2) 영진전문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1980.3.1., 1981.10.27., 1986.6.24., 1987.5.30., 1990.4.13., 1993.3.27., 1995.4.21., 1996.4.17., 1997.8.11., 1999.8.4., 2004.7.7., 2009.6.17., 2013.2.21., 2014.3.25., 2017.3.29., 2018.6.1.>

직종	일반직	기술직	계
인원	93명	23명	116명

별표 3) 영진전문대학교 부설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신설 1996.4.17., 1997.8.11., 1999.2.3., 2014.3.25., 2017.3.29., 2018.6.1.>

직종	일반직	기술직	계
인원	1명	4명	5명

별표 4) 영진사이버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신설 2001.11.26., 2009.6.17., 2014.3.25., 2017.3.29., 2021.2.4.>

직종	일반직	기술직	계
인원	25명	7명	32명